

LG에너지솔루션 부패방지 방침

2024년 4월

당사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임직원 개인과 회사와 이해상충되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금지하며, 본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 사규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당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 청탁금지법, 형법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독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패 행위는 임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당사에 대해 심각한 재무적, 신용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공무원에게 뇌물은 제공하는 경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위반행위자 개인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도 뇌물도 얻은 불법이득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침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함)를 보존하고 이를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 및 신고 임직원의 개인 정보는 비밀도 유지되며 신고 임직원은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 임직원의 기여 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명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회사도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당사의 협력회사, 고객사 및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본 규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지킴으로써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 관계자가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 당사 윤리규범 내지 사규 등에 따라 회사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해상충을 피하여야 합니다.

본 방침 및 관련 부패방지 절차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따라 당사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